

의안번호	제 195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5년 6월 2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9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6월 2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의료관광 여건을 조성하고,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(안 제3조)
-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(안 제4조)
- 선도 의료기관 선정·지원(안 제5조)
- 의료관광 홍보대사 (안 제6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5.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 : 붙임

6. 관련법령 : 붙임

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의료관광 여건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외국인환자”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09조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(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)으로 충청북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, 치료, 검진,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.
2. “의료관광”이란 충청북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·치료·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 및 외국인환자와 함께 온 사람이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의료관광 전문인력”이란 충청북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·치료·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외국인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, 외국인환자 및 외국인환자와 함께 온 사람의 체류·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

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
2.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·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의료관광 활성화 지원)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
2.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
3. 의료관광 홍보관 등 설치·운영 사업
4. 그 밖에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5조(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) ① 도지사는 「의료법」 제27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(이하 “선도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
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유치실적 등 사업추진능력 및 사후관리능력

2. 홍보, 외국인 전담인력 등 조직, 시설 현황

3. 그 밖에 의료관광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의료관광 홍보대사)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충청북도의 의료관광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 대하여,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제7조(조사 및 연구)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(관련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·법인, 단체에게 자료나·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의료관광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의료관광활성화를 국내외 홍보,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비용
-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비 등

3. 관련조문

- 제4조(의료관광 활성화 지원)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
2.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
3. 의료관광 홍보관 등 설치·운영 사업
4. 그 밖에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홈페이지운영, 의료관광 홍보비 및 홍보관 운영비 등
- 나. 추계의 전제 : 홈페이지·홍보관 운영(1년), 의료관광 홍보(10회)
- 다. 추 계 결 과 : '15년부터 향후 4년간 총 715,000천원 정도 소요
- 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5년)	2차년도 (2016년)	3차년도 (2017년)	4차년도 (2018년)
세 출	715,600	178,900	178,900	178,900	178,900
홈페이지 운영	43,600	10,900	10,900	10,900	10,900
의료관광홍보	360,000	90,000	90,000	90,000	90,000
홍보관 운영	312,000	78,000	78,000	78,000	78,000

6. 작성자 :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김양수

관련법령 발췌

□ 국민건강보험법

제109조(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)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.

□ 의료법 시행규칙

제19조의2(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) 법 제27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.

1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[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(G-1)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]
2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[본조신설 2009.4.29.]

□ 의료법

제27조의2(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)

-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